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633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633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460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체스터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A

변론 종결 2015. 11. 27.

판결 선고 2016. 1. 1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460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4. 9. 19.부터 위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용호

판사손성희

판사권순현

별지